

파스퇴르 우유의 허구성을 밝힌다.

大法院에서도 확인한

파스퇴르의 허위비방 과장 광고

파스퇴르 牛乳廣告가 허위비방과장 광고라는 사실이 大法院의 최종판결로 그동안 소비자들을 우롱한 “파스퇴르우유만이 진짜우유”란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파스퇴르乳業측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大法院의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韓國乳加工協會와 기존유업체가 「신성한 大法院判例, 高等法院 判決까지도 자기똥대로 해석, 상술로 이용하여 商利와 私慾을 채우려 한다」고 왜곡,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왜곡선전하고 있다.

本紙는 소비자들의 우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大法院 判決內容에 입각, 3년여 동안 끌어온 「진짜우유」시비와 파스퇴르광고의 허구성을 밝혀본다.

(編輯者 註)

파스퇴르, 大法院서 敗訴

大法院 특별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 10월10일 (주)파스퇴르유업이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등 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의 上告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파스퇴르 유업이 지난 87년 9월 우유시장에 뛰어들면서 1) IDF(국제유업연맹)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 탄생이라는 광고와 2) 캐나다, 호주,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언패스터라이제이션 우유(Unpasteurized Milk)의 시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초고운순

간살균우유(UHT)의 시판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광고 3) UHT우유에는 카제인 칼슘이 전혀 없어 지게 된다는 UHT 우유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사람이 소화할수 있는 칼슘은 아예 없는 것처럼 허위비방과장 광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허위비방과장 광고가 계속되자 韓國乳加工協會에서는 기존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오인이 우려돼 파스퇴르유업측에 허위비방 과장광고의 시정과 원유유통질서 문란행위의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파스퇴르유업측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허위비방 과장광고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유가공협회에서는 부득이 88년 1차로 공정거래실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사부, 국립보건원,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등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및 자료를 4차례에 걸쳐 종합검토, 심의한 결과 파스퇴르유업의 광고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비방·과장광고를 중지하고 중앙일간지 2개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파스퇴르유업은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서울고법에서 패소하자 이에도 불복, 대법에 상고해 이번엔 최종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허위비방과장 광고임을 적시한 大法院판결내용 상고이유 제2점의 제10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우유를 선전함에 있어 “아이. 디. 에프.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이하에 I.D.F.라 한다)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하였음에 대하여 아이, 디, 에프(IDF. 국제우유연맹)는 낙농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및 자문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벨기에에 설립된 단체로서 특정제품 및 품질을 공인하거나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원고가 그 제품 또는 사용원유에 대하여 I.D.F.로 부터 어떠한 시험, 검사나 인정을 받은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광고문안은 마치 원고의 우유가 I.D.F.의 특정 시험이나 검사등을 거쳐 공인 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자사 제품의 품질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문구의 해석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I.D.F.가 인정하는”이라는 표현은 “I.D.F.가 인정한”이라는 표현과는 달라서 “I.D.F.

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한”이라는 뜻밖에는 없으니 원심이 문구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제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고에서 캐나다, 호주, 스코트란드 등에서는 언패스티라이제이션(unpasteurization) 우유의 시판을 금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초고온순간 열처리우유(Ultra high temperature milk, 이하 U.H.T 우유라고 한다)의 시판을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취지로 광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I.D.F. 학보 200호의 기사의 문제된 문구인 “(캐나다, 호주에서) It is illegal to sell unpasteurized milk for human consumption” (사람이 소비하기 위하여 unpasteurized milk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에서의 unpasteurized milk라는 표현은 그 전후의 문맥이나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유등과 같이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즉 살균되지 아니한) 생유를 가르키는 뜻으로 해석되고 저온 살균방법에 의한 우유이외의 우유를 총칭하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광고는 일반적으로 U.H.T 우유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내 경쟁업자들의 우유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시판이 금지되는 우유인 것처럼 인식,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이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채택한 을제2 2호종의 2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수 없고, 그밖에 원심의 증거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4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U.H.T 우유와 저온 장시간살균우유가 그 영양분에 있어서 똑같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 두가지 처리법간에 영양분의 변성

및 파괴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저온장시간살균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우유가 초고온 순간처리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유보다 영양분이 덜 파괴된다고 할수는 있으나 그 차이라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것이 아니고 초고온 순간 처리방법에 의하면 유청단백질이 많이 변성되고 칼슘의 존재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영양소의 효율이나 소화율이 크게 나빠지는 것이라고 할수도 없고 카제인의 변화도 크지 아니하며 반면 초고온순간처리법에 의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장점도 있어서 두가지 방법에서 서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열처리우유에는 카제인 칼슘이 전혀없다든가 U.H.T우유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칼슘은 아예없는 것처럼 설명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는 경쟁업자의 우유에는 큰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원심이 간과하였거나 그 내용을 잘못 판단 하였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주로 위 두가지 처리법의 차이를 논하면서 저온장시간 살균우유의 장점을 강조하고 U.H.T우유

를 비롯한 고온열처리 우유에서의 영양소의 변성과 감소를 지적한 학자의 견해를 피력한 것들로서 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문제가 된 광고에서 선전한 것처럼 고온열처리방법(문구상 고온순간처리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에 의하면 카제인 칼슘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든가, U.H.T우유에는 유청 단백질이나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칼슘은 없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증거는 원고의 광고가 허위 내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좌우하기에 족한 증거가 될수 없어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명백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2점의 3과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고가 천연우유가 아닌것을 천연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광고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임에 틀림없고 그로 인하여 경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피고가 그 시정을 위하여 범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닦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